**※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측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역사적 원가 측정기준을 사용할 경우, 다른 시점에 취득한 동일한 자산이나 발생한 동일한 부채가 재무제표에 다른 금액으로 보고될 수 있다. |
| ② |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며, 또한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
| ③ |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
| ④ | 현행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
| ⑤ | 이행가치는 부채가 이행될 경우보다 이전되거나 협상으로 결제될 때 특히 예측가치를 가진다. |

**2.**㈜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장부금액이 ￦700,000인 기계장치를 ㈜민국의 기계장치(장부금액: ￦800,000, 공정가치: ￦900,000)와 교환하면서 현금 ￦5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유형자산처분손실로 ￦100,000을 인식하였다. ㈜대한은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설치장소 준비원가 ￦50,000과 설치원가 ￦50,000을 20x1년 1월 1일에 지출하고 즉시 사용하였다. 한편, ㈜대한은 취득한 기계장치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각각 ￦50,000과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대한이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1년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동 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대한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민국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130,000 | ② | ￦140,000 | ③ | ￦160,000 |
| ④ | ￦212,500 | ⑤ | ￦250,000 |  |  |

**3.**차량운반구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영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운반구를 ￦2,000,000(잔존가치: ￦20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의 20x1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각각 ￦1,800,000으로 동일하였으나, 20x2년 말 공정가치는 ￦1,300,000이고 회수가능액은 ￦1,100,000으로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대한이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총 금액은 얼마인가? 단, 차량운반구의 사용기간 동안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200,000 | ② | ￦360,000 | ③ | ￦400,000 |
| ④ | ￦540,000 | ⑤ | ￦600,000 |  |  |

**4.**㈜대한은 20x1년 7월 1일에 차입원가 자본화 적격자산에 해당하는 본사 사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본 공사는 20x2년 9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x1년에 지출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일자 | 20x1.7.1. | 20x1.10.1. | 20x1.12.1. |
| 지출액 | ￦500,000 | ￦600,000 | ￦1,200,000 |

㈜대한의 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 지급조건이며, 특정차입금 중 50%는 20x1년 9월 말까지 3개월 간 연 3%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처에 일시적으로 투자하였다. ㈜대한이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x1년 말에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으로 ￦2,333,000을 보고하였다면, 일반차입금의 연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 단, 연평균지출액,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  |  |  |  |  |
| --- | --- | --- | --- | --- |
| 구 분 | 차입금액 | 차입일 | 상환일 | 연 이자율 |
| 특정차입금 | ￦800,000 | 20x1.7.1. | 20x3. 6.30. | 5% |
| 일반차입금 | 1,000,000 | 20x1.1.1. | 20x3.12.31.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1.6% | ② | 3% | ③ | 5% |
| ④ | 8% | ⑤ | 10.5% |  |  |

**5.**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
| ② |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
| ③ |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도 포함한다. |
| ④ |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한다. |
| ⑤ |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

**6.**㈜대한은 ㈜민국이 20x1년 1월 1일에 발행한 액면금액 ￦50,000(만기 5년(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인 사채를 동 일자에 액면금액으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대한은 20x2년 중 사업모형의 변경으로 동 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FVPL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20x2년 말 현재 동 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손실충당금은 ￦3,000이다. 동 사채의 20x3년 초와 20x3년 말의 공정가치는 각각 ￦45,000과 ￦46,000이다. 동 사채가 ㈜대한의 20x3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동 사채의 20x3년 말 공정가치는 이자수령 후 금액이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2,000 감소 | ② | ￦1,000 감소 | ③ | ￦4,000 증가 |
| ④ | ￦5,000 증가 | ⑤ | ￦6,000 증가 |  |  |

**7.**㈜대한은 ㈜민국이 20x1년 1월 1일에 발행한 액면금액 ￦100,000(만기 3년(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의 사채를 동 일자에 ￦95,198(유효이자율 연 12%)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동 금융자산의 20x1년 말과 20x2년 말의 이자수령 후 공정가치는 각각 ￦93,417과 ￦99,099이며, ㈜대한은 20x3년 초 ￦99,099에 동 금융자산을 처분하였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필요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 --- | --- |
| ① |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보다 ㈜대한의 20x1년 말 자본총액은 더 크게 계상된다. |
| ② |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대한이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20x1년의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11,424이다. |
| ③ |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금융자산이 ㈜대한의 20x2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다. |
| ④ |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금융자산과 관련한 ㈜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 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882이다. |
| ⑤ |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보다 ㈜대한이 20x3년 초 금융자산 처분 시 처분이익을 많이 인식한다. |

**8.**낙농업을 영위하는 ㈜대한목장은 20x1년 1월 1일에 우유 생산이 가능한 젖소 10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목장은 우유의 생산 확대를 위하여 20x1년 6월 젖소 10마리를 1마리당 ￦100,000에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취득시점의 1마리당 순공정가치는 ￦95,000이다. 한편 ㈜대한목장은 20x1년에 100리터(ℓ)의 우유를 생산하였으며, 생산시점(착유시점) 우유의 1리터(ℓ)당 순공정가치는 ￦3,000이다. ㈜대한목장은 생산된 우유 전부를 20x1년에 거래처인 ㈜민국유업에 1리터(ℓ)당 ￦5,000에 판매하였다. 20x1년 말 현재 ㈜대한목장이 보유 중인 젖소 1마리당 순공정가치는 ￦100,000이다. 위 거래로 인한 ㈜대한목장의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단, 20x0년 말 젖소의 1마리당 순공정가치는 ￦105,000이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340,000 | ② | ￦450,000 | ③ | ￦560,000 |
| ④ | ￦630,000 | ⑤ | ￦750,000 |  |  |

**9.**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인식하므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도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
| ② |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 ③ |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
| ④ |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
| 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 ㈜대한이 발행한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사채)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0번과 11번에 대해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  | | --- | --- | | 액면금액 | ￦3,000,000 | | 사채권면 상 발행일 | 20x1년 1월 1일 | | 사채 실제 발행일 | 20x1년 3월 1일 | | 표시이자율 | 연 6%(매년 12월 31일에 지급) | | 사채권면 상 발행일의 유효이자율 | 연 6% | | 상환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만기 일시상환) |   현가계수표   |  |  |  |  |  |  |  | | --- | --- | --- | --- | --- | --- | --- | |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6% | 7% | 8% | 6% | 7% | 8% | | 1년 | 0.9434 | 0.9346 | 0.9259 | 0.9434 | 0.9346 | 0.9259 | | 2년 | 0.8900 | 0.8734 | 0.8573 | 1.8334 | 1.8080 | 1.7832 | | 3년 | 0.8396 | 0.8163 | 0.7938 | 2.6730 | 2.6243 | 2.5770 | |

**10.**다음 (A) 또는 (B)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대한이 20x1년 3월 1일에 사채발행으로 수취하는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자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A) 사채 실제 발행일의 유효이자율이 연 8%인 경우 |
| (B) 사채 실제 발행일의 유효이자율이 연 7%인 경우 |

|  |  |
| --- | --- |
| ① | (A)가 (B)보다 수취하는 금액이 ￦76,014만큼 많다. |
| ② | (A)가 (B)보다 수취하는 금액이 ￦72,159만큼 많다. |
| ③ | (A)가 (B)보다 수취하는 금액이 ￦76,014만큼 적다. |
| ④ | (A)가 (B)보다 수취하는 금액이 ￦72,159만큼 적다. |
| ⑤ | (A)와 (B)의 수취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

**11.**㈜대한은 20x3년 4월 1일에 사채액면금액 중 30%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현금 ￦915,000에 조기상환하였다. 위 <자료>에서 사채 실제 발행일(20x1년 3월 1일)의 유효이자율이 연 8%인 경우, ㈜대한이 조기상환시점에 사채상환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이자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9,510 | ② | ￦14,030 | ③ | ￦15,000 |
| ④ | ￦31,700 | ⑤ | ￦46,800 |  |  |

**12.**20x1년 1월 1일에 설립된 ㈜대한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순확정급여자산(부채)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8%로 매년 변동이 없다.

|  |
| --- |
| <20x1년>  ·  20x1년 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1,100,000이다.  ·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000,000이다.  ·  20x1년 말 순확정급여자산의 자산인식상한금액은 ￦60,000이다. |
| <20x2년>  ·  20x2년 당기근무원가는 ￦900,000이다.  ·  20x2년 말에 일부 종업원의 퇴직으로 ￦1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20x2년 말에 ￦1,000,000을 현금으로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x2년 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2,300,000이다.  ·  20x2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2,100,000이다. |

㈜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순확정급여자산이 ￦150,000인 경우, ㈜대한의 확정급여제도 적용이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이익(OCI)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12,800 감소 | ② | ￦14,800 감소 | ③ | ￦17,800 감소 |
| ④ | ￦46,800 감소 | ⑤ | ￦54,800 감소 |  |  |

**13.**㈜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종업원 30명 각각에게 앞으로 5년 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주가차액보상권(SARs) 30개씩을 부여하였다. 20x1년 말과 20x2년 말 주가차액보상권의 1개당 공정가치는 각각 ￦100과 ￦110이다. 20x2년 말 ㈜대한은 동 주가차액보상권을 모두 취소하고, 그 대신 상기 종업원 30명 각각에게 앞으로 3년 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주식선택권 30개씩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당초 가득기간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대한은 모든 종업원이 요구되는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실제로도 모든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였다. ㈜대한의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회계처리가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28,800만큼 감소시키는 경우, 20x2년 말 주식선택권의 1개당 공정가치는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100 | ② | ￦110 | ③ | ￦120 |
| ④ | ￦130 | ⑤ | ￦140 |  |  |

**14.**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이다.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
| ② |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한다. |
| ③ |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 ④ |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한, 기초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이다. |
| ⑤ | 리스이용자는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 경우 또는 개별 가격에 적절히 상응하여 리스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리스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

**15.**리스이용자인 ㈜대한은 리스제공자인 ㈜민국리스와 리스개시일인 2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초자산(생산공정에 사용할 기계장치)의 리스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이다.  ·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  ㈜대한은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3,000,000의 고정리스료를 지급한다.  ·  사용권자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치는 없다.  ·  20x1년 1월 1일에 동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연 8%로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이를 쉽게 산정할 수 있다.  ·  ㈜대한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을 현금 ￦500,000에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리스개시일 현재 동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x2년 말에 ㈜대한은 유의적인 상황변화로 인해 동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을 변경하였다.  ·  20x2년 말 현재 ㈜대한은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며, ㈜대한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10%이다.  ·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  |  |  |  | | --- | --- | --- | --- | --- | |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8% | 10% | 8% | 10% | | 1년 | 0.9259 | 0.9091 | 0.9259 | 0.9091 | | 2년 | 0.8573 | 0.8264 | 1.7832 | 1.7355 | | 3년 | 0.7938 | 0.7513 | 2.5770 | 2.4868 | |

㈜대한이 20x3년에 인식할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993,804 | ② | ￦1,288,505 | ③ | ￦1,490,706 |
| ④ | ￦2,577,003 | ⑤ | ￦2,981,412 |  |  |

**16.**20x1년 1월 1일 현재 ㈜대한의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이며, 자기주식과 우선주는 없다.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주식매입권 30,000개(20x3년 말까지 행사가능)를 발행하였으며, 주식매입권 1개가 행사되면 보통주 1주가 발행된다. 주식매입권의 행사가격은 1개당 ￦20,000이며, 20x1년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1주당 ￦25,000이다. 20x1년 10월 1일에 동 주식매입권 20,000개가 행사되었다. ㈜대한이 20x1년 당기순이익으로 ￦205,000,000을 보고한 경우 20x1년 희석주당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960 | ② | ￦972 | ③ | ￦976 |
| ④ | ￦982 | ⑤ | ￦987 |  |  |

**17.**㈜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상환우선주 200주(1주당 액면금액 ￦500)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동 상환우선주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은 상환우선주를 20x2년 12월 31일에 1주당 ￦600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 상환우선주의 배당률은 액면금액기준 연 3%이며, 배당은 매년 말에 지급한다.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20x1년 1월 1일 현재 상환우선주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연 6%이며, 그 현가계수는 아래 표와 같다.   |  |  |  | | --- | --- | --- | | 할인율  기간 | 6% | |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2년 | 0.8900 | 1.8334 |   · 20x1년 말에 ㈜대한은 동 상환우선주의 보유자에게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

㈜대한이 동 상환우선주와 관련하여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0 | ② | ￦3,000 | ③ | ￦3,600 |
| ④ | ￦6,408 | ⑤ | ￦6,738 |  |  |

**18.**20x1년 9월 1일에 ㈜대한은 ㈜민국에게 1년 간의 하자보증조건으로 중장비 1대를 ￦5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동 하자보증은 용역 유형의 보증에 해당한다. ㈜대한은 1년 간의 하자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중장비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중장비의 개별 판매가격은 보증조건 없이 1대당 ￦481,000이며, 1년 간의 하자보증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39,000이다. ㈜대한은 ㈜민국에게 판매한 중장비 1대에 대한 하자보증으로 20x1년에 ￦10,000의 원가를 투입하였으며, 20x2년 8월 말까지 추가로 ￦20,000을 투입하여 하자보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기 하자보증조건부판매와 관련하여 ㈜대한이 20x1년에 인식할 총수익금액과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부채는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총수익 |  | 부채 |
| ① | ￦475,000 |  | ￦25,000 |
| ② | ￦475,000 |  | ￦20,000 |
| ③ | ￦462,500 |  | ￦37,500 |
| ④ | ￦462,500 |  | ￦20,000 |
| ⑤ | ￦500,000 |  | ￦0 |

**19.**㈜대한은 20x1년 12월 1일에 ㈜민국에게 원가 ￦500,000의 제품을 ￦1,0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판매계약에는 20x2년 3월 31일에 동 제품을 ￦1,100,000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대한에게 부여하는 콜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은 20x2년 3월 31일에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콜옵션은 동 일자에 소멸되었다. 상기 재매입약정 거래가  ㈜대한의 20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현재가치평가는 고려하지 않으며, 계산과정에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100,000 감소 | ② | ￦75,000 감소 | ③ | ￦500,000 증가 |
| ④ | ￦525,000 증가 | ⑤ | ￦600,000 증가 |  |  |

**20.**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유형자산의 처분은 계약상대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포함되는 대가(금액)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유형에 관계없이 동 기준서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 |
| ② |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
| ③ | 고객이 약속한 대가 중 상당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대가의 금액과 시기는 고객이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계약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을 것이다. |
| ④ |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또는 비현금 대가의 약속)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 ⑤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

**21.**다음은 ㈜대한의 20x1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
| --- |
| ·  20x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다.  ·  20x1년 말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20,000이며, 20x1년 말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세법 상 부인액은 ￦5,000이다.  ·  20x1년 5월 1일에 ￦30,000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20x1년 10월 1일에 ￦40,000에 처분하였다.  ·  20x1년 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지분상품) 평가손실 ￦20,00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  20x1년 10월 1일 본사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100,000에 취득한 토지의 20x1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120,000이다. ㈜대한은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일시적 차이에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으며, 전기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 |

  ㈜대한이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96,000 | ② | ￦100,000 | ③ | ￦104,000 |
| ④ | ￦106,000 | ⑤ | ￦108,000 |  |  |

**22.**㈜대한은 20x3년 말 장부 마감 전에 과거 3년 간의 회계장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모두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  |
| --- |
| ·  기말재고자산은 20x1년에 ￦20,000 과소계상, 20x2년에 ￦30,000 과대계상, 20x3년에 ￦35,000 과대계상되었다.  ·  20x2년에 보험료로 비용 처리한 금액 중 ￦15,000은 20x3년 보험료의 선납분이다.  ·  20x1년 초 ㈜대한은 잔존가치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던 기계장치에 대해 ￦50,000의 지출을 하였다. 동 지출은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 및 감가상각하여야 하나, ㈜대한은 이를 지출 시점에 즉시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였다. 20x3년 말 현재 동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는 2년이며, ㈜대한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

  위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효과가 ㈜대한의 20x3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당기순이익 |
| ① | ￦15,000 감소 |  | ￦15,000 감소 |
| ② | ￦15,000 증가 |  | ￦15,000 감소 |
| ③ | ￦15,000 감소 |  | ￦30,000 감소 |
| ④ | ￦15,000 증가 |  | ￦30,000 감소 |
| ⑤ | ￦0 |  | ￦0 |

**23.**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
| ②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보고기간 후에 충족된 경우 당해 비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발행되는 당해 재무제표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
| ③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 ④ |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 또한 인식하지 아니한다. |
| ⑤ | 과거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최근 재무상태표의 분류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분류하거나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

**24.**다음은 ㈜대한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두 종류의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하는 금융부채(A사채, B사채)와 관련된 계정의 장부금액이다. 상기 금융부채 외에 ㈜대한이 보유한 이자발생 부채는 없으며, ㈜대한은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으로 이자비용 ￦48,191을 인식하였다. 이자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경우, ㈜대한이 20x1년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현금흐름에 표시할 이자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당기 중 사채의 추가발행·상환·출자전환 및 차입금의 신규차입은 없었으며,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20x1년 1월 1일 |  | 20x1년 12월 31일 |  |
|  | 미지급이자 |  | ￦10,000 |  | ￦15,000 |  |
|  | A사채(순액) |  | 94,996 |  | 97,345 |  |
|  | B사채(순액) |  | 110,692 |  | 107,334 |  |

|  |  |  |  |  |  |
| --- | --- | --- | --- | --- | --- |
| ① | ￦42,182 | ② | ￦43,192 | ③ | ￦44,200 |
| ④ | ￦45,843 | ⑤ | ￦49,200 |  |  |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번과 26번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자동차제조사인 ㈜대한과 배터리제조사인 ㈜민국은 동일 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다.  ·  ㈜대한은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x1년 7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민국을 흡수합병했으며, 합병대가로 ㈜민국의 기존주주에게 ㈜민국의 보통주(1주당 액면가 ￦100) 2주당 ㈜대한의 보통주(1주당 액면가 ￦200, 1주당 공정가치 ￦1,400) 1주를 교부하였다.  ·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요약재무상태표  20x1년 7월 1일 현재 | | | | | |  |  | 장부금액 |  | 공정가치 | | 현금 |  | ￦50,000 |  | ￦50,000 | | 재고자산 |  | 140,000 |  | 200,000 | | 유형자산(순액) |  | 740,000 |  | 800,000 | | 무형자산(순액) |  | 270,000 |  | 290,000 | | 자산 |  | ￦1,200,000 |  |  | | 매입채무 |  | ￦80,000 |  | ￦80,000 | | 차입금 |  | 450,000 |  | 450,000 | | 자본금 |  | 160,000 |  |  | | 주식발행초과금 |  | 320,000 |  |  | | 이익잉여금 |  | 190,000 |  |  | | 부채와 자본 |  | ￦1,200,000 |  |  |   ·  ㈜대한은 ㈜민국의 유형자산에 대해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20x1년 재무제표 발행이 승인되기 전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은 ㈜민국의 유형자산을 잠정적 공정가치인 ￦800,000으로 인식하였다. ㈜대한은 취득일 현재 동 유형자산(원가모형 적용)의 잔존내용연수를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잔존가치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월할상각)하기로 하였다.  ·  ㈜대한은 합병 후 배터리사업 부문의 영업성과가 약정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민국의 기존주주에게 현금 ￦100,000의 추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취득일 현재 이러한 조건부대가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는 ￦60,000이다.  ·  취득일 현재 ㈜민국은 배터리 급속 충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민국은 합병 전까지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총 ￦60,000을 지출하였으나, 아직 연구 단계임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대한은 합병 과정에서 동 급속 충전 기술 프로젝트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이 평가한 동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90,000이다. |

**25.**㈜대한이 취득일(20x1년 7월 1일)에 수행한 사업결합 관련 회계처리를 통해 최초 인식한 영업권은 얼마인가?

|  |  |
| --- | --- |
| ① | ￦240,000 |
| ② | ￦260,000 |
| ③ | ￦280,000 |
| ④ | ￦300,000 |
| ⑤ | ￦320,000 |

**26.**다음의 <추가자료> 고려 시, 20x2년 12월 31일에 ㈜대한의 흡수합병과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영업권과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순액)은 각각 얼마인가?

|  |
| --- |
| **<추가자료>**  ·  합병 후 ㈜민국의 배터리 제품에 대한 화재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어 20x1년 12월 31일 현재 추가 현금보상을 위한 영업성과 목표치가 달성되지 못했다. 그 결과 ㈜민국의 기존주주에 대한 ㈜대한의 추가 현금보상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 이는 취득일 이후 발생한 사실과 상황으로 인한 조건부대가의 변동에 해당한다.  ·  ㈜대한이 ㈜민국으로부터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가치평가는 20x2년 4월 1일(즉, 20x1년 재무제표 발행 승인 후)에 완료되었으며, 동 가치평가에 의한 취득일 당시 ㈜민국의 유형자산 공정가치는 ￦900,000이다. 잔존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방법 등 기타 사항은 동일하다.  ·  자산과 관련한 손상징후는 없다. |

|  |  |  |  |
| --- | --- | --- | --- |
|  | 영업권 |  | 유형자산(순액) |
| ① | ￦120,000 |  | ￦640,000 |
| ② | ￦280,000 |  | ￦630,000 |
| ③ | ￦180,000 |  | ￦640,000 |
| ④ | ￦280,000 |  | ￦540,000 |
| ⑤ | ￦180,000 |  | ￦630,000 |

**27.**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A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B기업의 지분이 10%에 불과하더라도 A기업의 종속회사인 C기업이 B기업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A기업이 B기업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 ② |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보유 지분을 투자 성격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
| ③ |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한다. |
| ④ | 손상차손 판단 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수가능액은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그 기업의 다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⑤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 일부를 처분하여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기업은 해당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

**28.**20x1년 1월 1일에 ㈜대한은 ㈜민국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를 ￦60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20x1년 1월 1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0,000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의 주식 취득일 현재 ㈜민국의 자산 및 부채 가운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토지 | ￦350,000 | ￦400,000 | | 재고자산 | 180,000 | 230,000 |   ·  ㈜민국은 20x1년 7월 1일에 토지 전부를 ￦420,000에 매각하였으며, 이 외에 20x1년 동안 토지의 추가 취득이나 처분은 없었다.  ·  ㈜민국의 20x1년 1월 1일 재고자산 중 20x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36,000이다.  ·  ㈜민국은 20x1년 8월 31일에 이사회 결의로 ￦100,000의 현금배당(중간배당)을 선언·지급하였으며, ㈜민국의 20x1년 당기순이익은 ￦300,000이다. |

㈜대한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민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상기 기간 중 ㈜민국의 기타포괄손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622,000 | ② | ￦642,000 | ③ | ￦646,000 |
| ④ | ￦650,000 | ⑤ | ￦666,000 |  |  |

**29.**20x1년 1월 1일에 ㈜대한은 ㈜민국의 지분 60%를 ￦35,000에 취득하여 ㈜민국의 지배기업이 되었다. ㈜대한의 ㈜민국에 대한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자본총계는 ￦40,000(자본금 ￦5,000, 자본잉여금 ￦10,000, 이익잉여금 ￦25,000)이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를 보이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비고 |
| 토지 | ￦17,000 | ￦22,000 | 20x2년 중 매각완료 |
| 차량운반구  (순액) | 8,000 | 11,000 | 잔존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

㈜민국이 보고한 당기순이익이 20x1년 ￦17,500, 20x2년 ￦24,000일 때 ㈜대한의 20x2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비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과 20x2년 12월 31일 연결재무상태표 상 비지배지분은 얼마인가? 단, 비지배지분은 ㈜민국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하고, 상기 기간 중 ㈜민국의 기타포괄손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비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 |  | 비지배지분 |
| ① | ￦7,200 |  | ￦33,000 |
| ② | ￦7,200 |  | ￦32,600 |
| ③ | ￦7,600 |  | ￦33,000 |
| ④ | ￦7,600 |  | ￦32,600 |
| ⑤ | ￦8,000 |  | ￦33,000 |

**3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
| --- | --- |
| ① |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예외 없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
| ②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
| ③ | 투자자가 시세차익, 투자이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상의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배력을 가지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 ④ | 투자자는 권리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방어권으로도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다. |
| ⑤ | 연결재무제표에 추가로 작성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으로 표시할 수 없다. |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민국의 의결권 있는 주식 60%를 ￦3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시점의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  다음은 20x1년부터 20x2년까지 ㈜대한과 ㈜민국의 요약재무정보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약포괄손익계산서 | | | | | | | | 계정과목 |  | 20x1년 | | |  | 20x2년 | | | |  | ㈜대한 |  | ㈜민국 |  | ㈜대한 |  | ㈜민국 | | 매출 |  | ￦850,000 |  | ￦500,000 |  | ￦800,000 |  | ￦550,000 | | (매출원가) |  | (700,000) |  | (380,000) |  | (670,000) |  | (420,000) | | 기타수익 |  | 210,000 |  | 170,000 |  | 190,000 |  | 150,000 | | (기타비용) |  | (270,000) |  | (230,000) |  | (200,000) |  | (210,000) | | 당기순이익 |  | ￦90,000 |  | ￦60,000 |  | ￦120,000 |  | ￦70,000 | |  | | | | | | | | | |  |  | 요약재무상태표 | | | | | | | | 계정과목 |  | 20x1년 | | |  | 20x2년 | | | |  | ㈜대한 |  | ㈜민국 |  | ㈜대한 |  | ㈜민국 | | 현금등 |  | ￦450,000 |  | ￦270,000 |  | ￦620,000 |  | ￦300,000 | | 재고자산 |  | 280,000 |  | 150,000 |  | 250,000 |  | 200,000 | | 종속기업투자 |  | 300,000 |  | - |  | 300,000 |  | - | | 유형자산 |  | 670,000 |  | 530,000 |  | 630,000 |  | 400,000 | | 자산 |  | ￦1,700,000 |  | ￦950,000 |  | ￦1,800,000 |  | ￦900,000 | | 부채 |  | ￦710,000 |  | ￦490,000 |  | ￦690,000 |  | ￦370,000 | | 자본금 |  | 700,000 |  | 250,000 |  | 700,000 |  | 250,000 | | 이익잉여금 |  | 290,000 |  | 210,000 |  | 410,000 |  | 280,000 | | 부채와자본 |  | ￦1,700,000 |  | ￦950,000 |  | ￦1,800,000 |  | ￦900,000 |   · ㈜대한과 ㈜민국 간의 20x1년과 20x2년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연도 | 내부거래 내용 | | 20x1년 | ㈜대한은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100,000(매출원가 ￦80,000)에 ㈜민국에게 판매하였다. ㈜민국은 ㈜대한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중 20x1년 말 현재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x2년 동안 연결실체 외부로 모두 판매하였다. | | 20x2년 | ㈜민국은 보유 중인 토지 ￦95,000을 ㈜대한에게 ￦110,000에 매각하였으며, ㈜대한은 20x2년 말 현재 동 토지를 보유 중이다. |   · ㈜대한의 별도재무제표에 ㈜민국의 주식은 원가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 자산의 손상 징후는 없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

**31.**20x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의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2,402,000 | ② | ￦2,500,000 | ③ | ￦2,502,000 |
| ④ | ￦2,702,000 | ⑤ | ￦2,850,000 |  |  |

**32.**20x2년 ㈜대한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연결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208,000 | ② | ￦197,000 | ③ | ￦183,000 |
| ④ | ￦182,000 | ⑤ | ￦177,000 |  |  |

**33.**㈜대한(기능통화는 원화(￦)임)의 다음 외화거래 사항들로 인한 손익효과를 반영하기 전 20x1년 당기순이익은 ￦20,400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은 20x1년 11월 1일에 재고자산 ¥500을 현금 매입하였으며 기말 현재 순실현가능가치는 ¥450이다. ㈜대한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적용하며 장부상 수량은 실제수량과 같았다.  ·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일본 소재 토지를 장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0에 현금 취득하였으며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 동 토지(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며 20x1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는 ¥2,200이다.  · 20x1년 각 일자별 환율정보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구분 | 20x1. 1. 1. | 20x1. 11. 1. | 20x1. 12. 31. | 20x1년 평균 | | ￦/¥ | 10.0 | 10.3 | 10.4 | 10.2 |   ·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모두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다.  · 거래일을 알 수 없는 수익과 비용은 해당 회계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며, 설립 이후 기간에 환율의 유의한 변동은 없었다. |

위 외화거래들을 반영한 후 ㈜대한의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23,750 | ② | ￦23,000 | ③ | ￦22,810 |
| ④ | ￦21,970 | ⑤ | ￦21,930 |  |  |

**34.**㈜대한은 20x1년 9월 1일에 옥수수 100단위를 ￦550,000에 취득하였다. 20x1년 10월 1일에 ㈜대한은 옥수수 시가하락을 우려하여 만기가 20x2년 3월 1일인 선도가격(￦520,000)에 옥수수 100단위를 판매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였으며, 이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일자별 옥수수 현물가격 및 선도가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일자 | 옥수수 100단위  현물가격 | 옥수수 100단위  선도가격 |
| 20x1. 10. 1. | ￦550,000 | ￦520,000(만기 5개월) |
| 20x1. 12. 31. | 510,000 | 480,000(만기 2개월) |
| 20x2. 3. 1. | 470,000 |  |

자산에 대한 손상 징후에 따른 시가 하락은 고려하지 않는다. 파생상품평가손익 계산 시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20x2년 3월 1일에 수행하는 회계처리가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는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50,000 이익 | ② | ￦45,000 손실 | ③ | ￦30,000 이익 |
| ④ | ￦30,000 손실 | ⑤ | ￦10,000 이익 |  |  |

**35.**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환율은 두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이다. |
| ② | 외화는 회사 본사 소재지 국가 외에서 통용되는 통화이다. |
| ③ | 마감환율은 보고기간 말의 현물환율이다. |
| ④ |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이다. |
| ⑤ | 현물환율은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이다. |

**36.**다음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
| ② | 회수가능가액이란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
| ③ |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
| ④ |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
| ⑤ | 연금충당부채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가입자에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와 전체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

**37.**「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을 뺀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
| ② |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비교환수익에 반영한다. |
| ③ |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한다. |
| ④ |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 ⑤ |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한다. |

**38.**「지방회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법에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⑤ |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일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

**39.**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인식할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
| ② | 채무증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에는 직전 소유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 |
| ③ |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 ④ | 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유상관리전환인 경우에는 관리전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무상관리전환인 경우에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 ⑤ |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며,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을 취득부대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40.**다음은 지방자치단체 A의 20x1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회계자료이다. 아래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  |
| --- |
| ·  20x1년에 청구권이 발생한 지방세수익은 ￦500,000이다.  ·  20x1년에 지방자치단체 A가 운영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총원가는 ￦500,000, 사용료 수익은 ￦200,000이다. 지방자치단체 A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보조 목적의 보조금 ￦20,000을 수령하였다.  ·  20x1년에 관리운영비는 ￦200,000이 발생하였다.  ·  20x1년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처분손실 ￦50,000과 이자비용 ￦10,000이 발생하였다.  ·  20x1년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취득원가는 ￦20,000이며,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30,000이다.  ·  20x1년에 ㈜대한은 지방자치단체 A에게 현금으로 ￦40,000을 기부하였다. 동 기부금은 특정사업용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  20x1년에 지방자치단체 A는 청사이전으로 인하여 필요없는 건물(장부가액은 ￦120,000이며, 공정가액은 ￦200,000)을 지방자치단체 B에게 회계 간의 재산이관(관리전환)을 하였다. |

 20x1년 지방자치단체 A의 재정운영표 상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재정운영순원가 |  | 재정운영결과 |
| ① | ￦540,000 |  | ￦0 |
| ② | ￦530,000 |  | ￦110,000 |
| ③ | ￦530,000 |  | ￦10,000 |
| ④ | ￦560,000 |  | ￦(-)20,000 |
| ⑤ | ￦560,000 |  | ￦100,000 |

**41.**㈜대한의 20x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원재료 매입액은 ￦55,000이며, 가공원가는 ￦64,000이다. 이 경우 ㈜대한의 20x1년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구 분 | 원재료 | 재공품 | 제품 |
| 기초금액 | ￦23,000 | ￦30,000 | ￦13,000 |
| 기말금액 | 12,000 | 45,000 | 28,000 |

|  |  |  |  |  |  |
| --- | --- | --- | --- | --- | --- |
| ① | ￦12,000 | ② | ￦15,000 | ③ | ￦23,000 |
| ④ | ￦28,000 | ⑤ | ￦30,000 |  |  |

**42.**㈜대한은 20x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기계시간이다. ㈜대한은 20x1년 초에 연간 제조간접원가를 ￦80,000으로, 기계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하였다. ㈜대한의 20x1년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x1년 중 작업 #101, #102, #103을 착수하였다.  ·  20x1년 중 작업별 실제 발생한 원가 및 기계시간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구 분 | #101 | #102 | #103 | 합 계 | | 직접재료원가 | ￦27,000 | ￦28,000 | ￦5,000 | ￦60,000 | | 직접노무원가 | ￦25,000 | ￦26,000 | ￦13,000 | ￦64,000 | | 기계시간 | 1,400시간 | 1,800시간 | 600시간 | 3,800시간 |   ·  20x1년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총 ￦82,000이다.  ·  작업 #101과 #102는 20x1년 중 완성되었으나, #103은 20x1년 말 현재 작업 중이다.  ·  20x1년 중 #101은 ￦120,000에 판매되었으나, #102는 20x1년 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다. ㈜대한의 매출은 #101이 유일하다. |

㈜대한이 총원가기준 비례배부법을 이용하여 배부차이를 조정한다면, 20x1년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24,600 | ② | ￦27,300 | ③ | ￦28,600 |
| ④ | ￦37,600 | ⑤ | ￦39,400 |  |  |

**43.**㈜대한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의 시작 시점에서 100%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대한의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구 분 | 물 량 | 재료원가 | 가공원가 |
| 기초재공품 | 2,000단위  (가공비완성도 60%) | ￦24,000 | ￦10,000 |
| 당기착수량 | 10,000단위 |  |  |
| 기말재공품 | 4,000단위  (가공비완성도 50%) |  |  |
| 당기투입원가 |  | ￦1,500,000 | ￦880,000 |

㈜대한의 종합원가계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당기 중에 공손이나 감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  |  |
| --- | --- |
| ① | 평균법을 사용한다면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환산량은 10,000단위이다. |
| ② | 평균법을 사용한다면 기말재공품 원가는 ￦686,000이다. |
| ③ |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면 완성품 원가는 ￦1,614,000이다. |
| ④ |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면 기초재공품 원가는 모두 완성품 원가에 배부된다. |
| ⑤ | 완성품 원가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값이 평균법으로 계산한 값보다 크다. |

**44.**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아래의 보기에서 변동되는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  |
| --- | --- |
| ① |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른 경우에도 변동원가계산의 손익분기점은 변화가 없다. |
| ② | 영업레버리지도가 3이라는 의미는 매출액이 1% 변화할 때 영업이익이 3% 변화한다는 것이다. |
| ③ |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손익분기 매출액은 증가한다. |
| ④ | 안전한계는 매출액이 손익분기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 ⑤ | 단위당 공헌이익이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진다. |

**45.**㈜대한은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었다. 경영진은 외부보고 목적의 전부원가계산 자료와 경영의사결정 목적의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대한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생 산 량(단위) |  | 40,000 |  | 50,000 |  | 20,000 | | 판 매 량(단위) |  | 40,000 |  | 20,000 |  | 50,000 |   · 1단위당 판매가격은 ￦30이다.  · 변동제조원가는 1단위당 ￦10, 변동판매관리비는 1단위당 ￦4이다.  ·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00,000, 고정판매관리비는 ￦100,000이다.  · 과거 3년 동안 ㈜대한의 판매가격과 원가는 변하지 않았다. |

위 자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3차년도까지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따른 누적영업손익은 동일하다. |
| ② | 3차년도 변동원가계산에 따른 영업이익은 ￦300,000이다. |
| ③ | 2차년도의 경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 원가가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 원가보다 크다. |
| ④ | 변동원가계산에서 고정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 ⑤ | 3차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매출원가는 ￦1,120,000이다. |

**46.**㈜대한은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 1월과 2월에 실제로 생산된 제품 수량과 차이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월 | 실제 생산된  제품 수량 | 고정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예산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
| 1월 | 1,500단위 | ￦500 불리 | ￦1,000 불리 |
| 2월 | 2,000단위 | ￦500 유리 | ￦500 유리 |

㈜대한이 20x1년 1월과 2월에 동일한 표준배부율을 적용하고 있다면, 제품 1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얼마인가? 단, 고정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제품 생산량이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3 | ② | ￦4 | ③ | ￦5 |
| ④ | ￦6 | ⑤ | ￦7 |  |  |

**47.**㈜대한은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팀이 우승하면, 10억 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 경품 이벤트의 홍보효과로 인해 ㈜대한의 기대현금유입액은 한국 축구팀의 우승 여부에 관계없이 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은 경품 이벤트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동 보험상품 가입 시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경우, 보험사가 10억 원의 경품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동 상품의 보험료는 1억 원이며, 각 상황에 따른 기대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기대현금흐름(보험료 제외) | | |  |
|  | 월드컵 우승 성공 |  | 월드컵 우승 실패 |  |
| 보험 가입 | 3억 원 |  | 3억 원 |  |
| 보험 미가입 | (-) 7억 원 |  | 3억 원 |  |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최소한 몇 퍼센트(%)를 초과하면 ㈜대한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단,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5% | ② | 10% | ③ | 20% |
| ④ | 30% | ⑤ | 40% |  |  |

**48.**㈜대한의 20x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예상 상품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월 | 예상 매출액 |
| 1월 | ￦4,000,000 |
| 2월 | 5,000,000 |
| 3월 | 6,000,000 |
| 4월 | 7,000,000 |

㈜대한은 20x1년 동안 월말 재고액을 다음 달 예상 매출원가의 10%(이하 재고비율)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만약 20x2년 초부터 재고비율을 20%로 변경·유지한다면, 20x2년 3월 예상 상품매입액은 재고비율을 10%로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대한의 매출총이익률은 30%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50,000 | ② | ￦60,000 | ③ | ￦70,000 |
| ④ | ￦80,000 | ⑤ | ￦90,000 |  |  |

**49.**㈜대한은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A를 자가제조하고 있으나,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부품 A와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의 회계팀은 아래의 자료를 경영진에게 제출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부품 A 1단위당 금액 | | 직접재료원가 | ￦38 | | 직접노무원가 | 35 | | 변동제조간접원가 | 20 | | 감독관 급여 | 40 | | 부품 A 전용제조장비 감가상각비 | 39 | | 공통관리비의 배분 | 41 |   ·  매년 10,000개의 부품 A를 생산하여 모두 사용하고 있다.  ·  만일 외부에서 부품 A를 구입한다면 감독관 급여는 회피가능하다.  ·  부품 A 전용제조장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매각이 불가능하다.  ·  공통관리비는 회사 전체의 비용이므로 외부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피가 불가능하다.  ·  만일 부품 A를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제조에 사용되던 공장부지는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며, 연간 ￦240,000의 공헌이익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

㈜대한의 경영진은 부품 A를 자가제조하는 것이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무차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외부 공급업체가 제시한 부품 A의 1단위당 금액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93 | ② | ￦117 | ③ | ￦133 |
| ④ | ￦157 | ⑤ | ￦196 |  |  |

**50.**다음 중 원가관리회계의 이론 및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안전재고는 재고부족으로 인해 판매기회를 놓쳐서 기업이 입는 손실을 줄여준다. |
| ② | 제품의 품질수준이 높아지면, 실패원가가 낮아진다. 따라서 품질과 실패원가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 |
| ③ | 제약이론은 주로 병목공정의 처리능력 제약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
| ④ | 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은 특정 제품이 고안된 시점부터 폐기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원가를 식별하여 측정한다. |
| ⑤ | 적시생산시스템(JIT)은 재고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생산시스템보다 안전재고의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

|  |
| --- |
|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끝-**

여 백